

## 후대교배종 콩 MON 87708 x MON 89788

### 1.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제12조 3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 제4-9조

### 2.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

	모품종 1	모품종 2
Event 명	MON 87708	MON 89788
특성	제초제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
심사완료일		

### 3. 심사경위

- '08.1.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 LMO는 반드시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이미 환경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후대교배종의 특성 등을 검토함.
- '13.01.04일 LMO 환경위해성 심사 접수 및 심사 진행

### 4. 심사결과

- Southern blot 결과로부터 단일 이벤트의 유전자들이 각각 안정적으로 후대교배종 MON87708xMON89788에 유전됨이 확인되었고, DMO 및 CP4 EPSPS 단백질의 발현량도 해당 모본과 유사함이 인정되었다. Dicamba(디캄바) 및 glyphosate(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내성 실험에 있어서도 단일 이벤트와 유사하여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기타 성분분석이나 작물학적 특성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비변형대조군과 일부 지역 및 형질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도입유전자들 간에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